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관광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르므로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는 운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는 폐지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조례안은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영등포

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조례 폐지 전 미결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 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관광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르므로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는 운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7. ~ 9.2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